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賣買用中古自動車에 對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 目 次

1. 審 查 經 過 ..... 2
2. 提案說明要旨 .....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 3
4. 質 疑 吳 答 辯 要 旨 ..... 4
5. 討 論 要 旨 ..... 4
6. 審 查 結 果 ..... 4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 對한  
市稅課稅免除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 審 查 報 告

1991年 12月 27日

內 務 委 員 會

###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19日

다. 上 程 日 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가. 提案理由

- 無籍車輛을 防止하고 中古自動車 去來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自動車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中古自動車 賣買業 許可를 받은者가 賣買를 위하여 取得·登錄하는 自動車에 대하여
- 取得稅는 課稅免除하고 登錄稅는 地方稅法 第 13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1000분의 10의 稅率을 適用하여 不均一課稅하였으나

- 課稅免除・不均一 課稅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延長하여 一定期間 課稅免除・不均一課稅하고자 함.

#### 나. 主要骨子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 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安鍾贊)

- 本 改正條例案은 無籍車輛을 防止하고 中古自動車の 去來秩序確立을 위하여 中古自動車 賣買業者가 賣買에 공하기 위하여 取得・登錄하는 自動車の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하는 條例가 '91年末로 時限滿了됨에 따라
- 時限을 延長하여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의거 '91. 11. 21.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案으로서
- 改正內容은 條例와 適用 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려는 事案임 (附則 第 ②項)

첫째 : 同條例에 의한 課稅는 100분의 50으로 不均一課稅함에도  
課稅免除 및 免除란 用語로 되어있어 不均一課稅와  
輕減用語로 調整하였고(第 3條, 第 4條)

둘째 :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려는  
事案임. (附則 第 ②項)

以上은 冷·暖房 燃料의 現代化로 都市民의 生活便益圖謀 및 快適한 都  
市環境造成을 위하여 施行하는 都市가스事業의 公益 目的 遂行에 充實  
하도록 地方稅法 第7條의 規定에 依據 支援코자 하는 것으로 改正案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5. 討 論 要 旨 : 省 略

6. 審 查 結 果 : 修 正 案 可 決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대한  
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

提出年月日 : '91. 12. 26

提 案 者 : 內務委員長

## 1. 修正 理由

現行의 減免條例대로 '94년까지 適用時限을 延長함은 向後經  
濟與件의 變動에 따른 稅法 改正등에 彈力的으로 適應치못  
하는 不合理한 市稅運用이 될 憂慮가 있으므로 每年適用 時  
限을 決定함이 妥當하리라 思料됨.

## 2. 主要 骨子

- . 中古 自動車の 去來秩序確立을 爲하여 中古自動車 賣買業  
者가 取得·登錄하는 自動車에 대해 課稅免除 및 不均一  
課稅 하였으나 그 適用時限이 91年 滿了됨에 따라
- 課稅減免 및 不均一適用時限을 延長토록 調整코자 함(附則)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賣買用中古自動車에 對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對한 修正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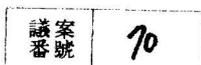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賣買用中古自動車에 對한 市  
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 案 附則 第2項中 “1994年 12月 31日” 을 “1992年 12月 31日”  
로 한다.

### 修正案對比表

改 正 案	修 正 案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 (條例 第1703號)</p> <p>② (適用時限) .....</p> <p>.....</p> <p>1994年 12月 31日까지 施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② (適用時限) .....</p> <p>.....</p> <p>1992年 12月 31日까지 施行 한다.</p>

## 大田直轄市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對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 中 改正 條例 案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 가. 無籍車輛을 防止하고 中古自動車 去來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自動車 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中古自動車 賣買業 許可를 받은者가 賣買 를 위하여 取得·登錄하는 自動車에 대하여
- 나. 取得稅는 課稅免除하고 登錄稅는 地方稅法 第 132條의 規定에 不拘 하고 1000분의 10의 稅率을 適用하여 不均一 課稅하였으나
- 다. 課稅免除·不均一 課稅 期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延長하여 一定期間 課稅免除·不均一 課稅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 3. 參考事項

- 自動車管理法
  - 第 2條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7. “自動車管理事業”이라 함은 中古自動車賣買業, 自動車 整備業 및 自動車廢車業을 말한다.
  - 第 49條 (自動車管理業의 許可등) ① 自動車管理業을 영위하고자하는 者는 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管理事業의 경우에는 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等を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여야 한다.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法豫告
  - 期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法 : 揭示公告 및 市公報掲載 ('91. 11. 28 第 74 號)
  - 結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감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감면제및불균일과세  
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 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부 칙 (조례 제 1703호)</p> <p>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1991년 12월 31일까지</u> 시행한다.</p>	<p>부 칙 (조례 제1703호)</p> <p>② (적용시한) ----- ----- <u>1994년 12월 31일까지</u> ----- -----</p>